

제296회 정례회
2010. 12. 14(화)

심 사 보 고 서

○ 충청북도 재해영향평가조례 폐지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
건설소방위원회

「충청북도 재해영향평가조례 폐지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2010. 12. 14(화)

건설소방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발의일자 : 2010년 11월 12일

다. 회부일자 : 2010년 11월 18일

라. 상정일자 : 2010년 12월 7일

(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균형건설국장 송 영 화)

가. 제안이유

- 조례의 상위법령인 「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」이 폐지(2008.3.28)됨에 따라 「충청북도 재해영향평가조례」를 폐지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「충청북도 재해영향평가조례」 폐지

3. 검토보고 요지

(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: 길 기 응)

- 충청북도 재해영향평가조례 폐지조례안을 검토한바
- 조례의 상위법령인 「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」 이 폐지(2008.3.28)됨에 따라 「충청북도 재해영향평가조례」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

※ 부산, 대구, 광주, 대전, 울산, 경기, 강원, 경북 등 8개시도 폐지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재해영향평가조례 폐지조례안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재해영향평가조례 폐지조례안

충청북도 재해영향평가조례를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